

의안번호	2126514
의 퇴 인	성일종의원
회 답 일	2024.04.26.
추계번호	24D015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이 의결되고 동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의관을 의무복무하게 할 경우, 인건비와 부담금을 합한 추가재정소요는 의무사관학교 정원이 40명일 때 2034~2038년까지 5년간 425억원, 정원이 100명일 때 1,063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4~2038년

(단위: 억원)

구분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연평균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 (안 제7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시나리오1 (정원 40명)	22.0	46.4	78.1	117.6	161.2	425.2	85.0
	시나리오2 (정원 100명)	54.9	115.9	195.2	294.0	402.9	1,063.0	212.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무복무 기간)제1항제2호 의2호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의무복 무기간은 15년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의무복무기간)제1항제2호의2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비용추계는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2028년부터 학생이 입학하여 전원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서 의무복무를 한다고 가정하되, 입학정원을 40명과 100명 두 가지로 설정하여 의무복무에 따른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의무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에 따라 운영비, 군인연금 등의 재정변동이 수반될 수 있으나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외의 재정소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은 2024년 기준 군의관 급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거시경제 변수 전망(2022.12.)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 개정안의 의무사관학교 졸업자 군의관 인원은 순증한다고 보고 계급간 정원조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¹⁾ 부칙 제1조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학교의 건설 및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의무사관학교가 개교하고 2034년에 국군의무사관학

1) 동 비용추계는 법률안은 성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126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 설치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그에 따라 비용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교를 졸업한 군의관이 처음 임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중위로 임관되어 군의관 신분이 되면, 이후 국군수도병원 소속으로 민간 수련병원에 파견되어 전공의 과정 5년(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게 됨.
-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며, 「군인사법」 제7조제3항²⁾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습기간 5년을 가산하면 의무복무기간은 20년이 됨

[표 2] 의무사관학교 졸업자 군의관 복무연수별 계급 및 호봉

복무 연수	과 정	계 급	호 봉
1년	인턴(1년)	중 위	1
2년	레지던트(4년)		2
3년			3
4년			2
5년		3	
6년		대 위	4
7년	5		
8년	6		
9년	7		
10년	8		
11년	소 령		6
12년		7	
13년		8	
14년		9	
15년		10	
16년		11	
17년	군의관 의무복무 (20년)	9	
18년		10	
19년		11	
20년		12	
21년		13	
22년	중 령	11	
23년		12	
24년		13	
25년		14	
	대 령	11	
		12	
		13	
		14	

주: 국방부가 의무사령부 소령 이상 장기복무 군의관 전 인원의 평균 진급기간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
자료: 국방부

2)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34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기간은 2034년부터 2038년까지 5년으로 함

- 의무사관학교 졸업자가 군의관으로서 중위로 임관된 후 전공의 과정에 있는 장기 복무 군의관들에 대한 급여는 국방부에서 지급하게 되며, 민간병원에서 수련시에도 각자의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의무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의무사관학교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학년별 정원을 40명과 100명 2개의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추계함

[표 3] 의무사관학교 졸업자의 군의관 인원 추정(2034~2038)

(단위: 명)

		2034	2035	2036	2037	2038
시나리오1	2028년 입학	40 (중위1호봉)	40 (중위2호봉)	40 (대위1호봉)	40 (대위2호봉)	40 (대위3호봉)
	2029년 입학		40 (중위1호봉)	40 (중위2호봉)	40 (대위1호봉)	40 (대위2호봉)
	2030년 입학			40 (중위1호봉)	40 (중위2호봉)	40 (대위1호봉)
	2031년 입학				40 (중위1호봉)	40 (중위2호봉)
	2032년 입학					40 (중위1호봉)
	합계	40	80	120	160	200
시나리오2	2028년 입학	100 (중위1호봉)	100 (중위2호봉)	100 (대위1호봉)	100 (대위2호봉)	100 (대위3호봉)
	2029년 입학		100 (중위1호봉)	100 (중위2호봉)	100 (대위1호봉)	100 (대위2호봉)
	2030년 입학			100 (중위1호봉)	100 (중위2호봉)	100 (대위1호봉)
	2031년 입학				100 (중위1호봉)	100 (중위2호봉)
	2032년 입학					100 (중위1호봉)
	합계	100	200	300	400	500

□ 국방부가 제출한 2024년 기준 군의관(중위1호봉~대위3호봉) 급여를 바

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거시경제 변수 전망(2022.12)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군의관의 연급여를 추정

○ 2024년 기준 군의관 연간급여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군의관 1인당 평균 연간급여(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계급·호봉		중위 1호봉 (인턴)	중위 2호봉 (레지던트 1년차)	대위 1호봉 (레지던트 2년차)	대위 2호봉 (레지던트 3년차)	대위 3호봉 (레지던트 4년차)
기본급	기본급	24,497	25,706	30,973	32,600	34,228
	정근수당	0	214	516	815	1,141
수당	정근수당가산금	360	360	360	360	360
	성과상여금 ¹⁾	2,271	2,271	3,352	3,352	3,352
	시간외수당 ²⁾	1,218	1,218	1,672	1,672	1,672
	장려수당	0	0	0	6,600	6,600
진료업무보조비 ³⁾		—	—	—	—	—
실비 변상	연가보상비 ⁴⁾	644	676	814	857	899
	명절휴가비	2,450	2,571	3,097	3,260	3,423
	직급보조비	2,100	2,100	3,000	3,000	3,000
	급식비	1,646	1,646	1,646	1,646	1,646
합계		35,185	36,762	45,431	54,162	56,321

주: 1) 성과상여금: 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4년 기준 계급별 평균 지급액을 적용
 2) 시간외수당: 계급별 단가에 따라 매월 기본 지급(10시간)되는 기준으로 적용
 3) 진료업무보조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최대 250만원/월)되는 금액으로, 인턴·레지던트는 군 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이 없어 미지급
 4) 연가보상비: 잔여 연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2023년 최대 보상일수(11일) 기준으로 적용
 자료: 국방부

○ 2024년 기준 군의관 연간급여 합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거시경제 변수 전망(2022.12)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군의관의 연급여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 군의관 1인당 연간 급여 추정(2034~2038)

(단위: 천원)

	2034	2035	2036	2037	2038
중위1호봉	48,354	49,915	51,515	53,089	54,776
중위2호봉	50,521	52,152	53,824	55,468	57,231
대위1호봉	62,435	64,450	66,516	68,549	70,727
대위2호봉	74,434	76,836	79,300	81,722	84,319
대위3호봉	77,401	79,899	82,461	84,980	87,68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의관을 의무복무하게 할 경우,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을 합한 추가재정소요는 의무사관학교 정원이 40명일 때 2034년~2038년까지 5년간 425억원, 정원이 100명일 때 1,063억원으로 추계됨

[표 6] 군의관 의무복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34~2038)

(단위: 억원)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시나리오1 (정원 40명)	인건비 합계	19.3	40.8	68.7	103.5	141.9	374.3
	기관부담금	2.6	5.5	9.3	14.1	19.3	50.9
	합계	22.0	46.4	78.1	117.6	161.2	425.2
시나리오2 (정원 100명)	인건비 합계	48.4	102.1	171.9	258.8	354.7	935.8
	기관부담금	6.6	13.9	23.4	35.2	48.2	127.2
	합계	54.9	115.9	195.2	294.0	402.9	1,063.0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성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126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 설치법안이 수정의결되는 경우 비용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